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382

제출년월일 : 2025. 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 조성한 '평창 목재문화체험장'에 대한 관리·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, 사용료 징수·예산지원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(안 제1조)

나. 목재문화체험장의 기능(안 제4조)

다. 체험장의 운영 및 예산지원(안 제5조 ~ 안 제9조)

라. 체험료의 징수 및 감면, 반환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~ 안 제12조)

마. 체험장 운영 활성화(안 제13조)

바. 보험가입, 손해배상 등(안 제15조 ~ 안 제16조)

사. 위탁계약, 준용 규정 등(안 제17조 ~ 안 제1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2025년 예산에 450백만원 반영되었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　　타 :

1) 입법예고(2024. 10. 11. ~ 10. 30.) 결과 별첨(제출의견 1건, 미반영)

- 평창군 공고 제2024-1388호, 산림과-5093(2024. 10. 4.)호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4655(2024. 9. 23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4655(2024. 9. 23.)호]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반영 [가족복지과-11118(2024. 9. 30.)호]

- 체험료 감면 사유에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

- 시설 입장 또는 거부 사유에 '혐오 및 유해동물'을 '반려동물'로 개선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9867(2024. 12. 17.)호]

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10519(2024. 12. 27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평창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평창 목재문화체험장(이하 “체험장”이라 한다)의 위치는 평창군 평창읍 산책길 180 일원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목재 체험 프로그램”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.
2. “체험료”란 체험장의 목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
3. “관리자”란 시설을 관리·운영하는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·운영하는 사람(법인·단체 및 개인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4. “수탁기관”이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4조(기능)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

2.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 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

3.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

4.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

5.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·홍보

6. 목재 관련 기관·단체와의 협력·지원

제5조(운영 및 예산의 지원) ① 체험장은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목공예기능사, 목공지도사, 산림치유지도사, 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허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관련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·위탁 등의 절차를 이행한 자의 작업은 허가할 수 있다.

제6조(강사 초빙 등) 군수는 각종 목재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운영시간) ① 체험장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.

1. 3월 ~ 10월: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

2. 11월 ~ 2월: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수는 사전에 조정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개장 및 휴장) 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1. 월요일(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휴장)

2. 1월 1일, 설 연휴와 추석 연휴

3.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
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

③ 군수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9조(행위제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 및 제15조의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심자

2. 음주, 흡연 및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

3.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사람

4.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

5.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행위

6.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(다만,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.)

7.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,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

제10조(체험료의 징수)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.

② 목재 체험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별표에 따르며,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은 체험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별도로 징수한다.

③ 체험료는 현금, 신용(체크)카드, 지역화폐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를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체험료의 감면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
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
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4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5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
6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7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8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(상이등급 1급·2급·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)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9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10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11.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

12.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에 필요한 경우

1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제3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표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체험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
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)

2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(65세 이상인 사람) 및 관련 행사 참가자

3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른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

4.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체험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

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
6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
제12조(체험료의 반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전액 반환

가. 체험 예정일 5일 전까지 체험 예약 신청을 취소한 경우

나. 제9조에 따라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

다. 관리·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

라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견되어 체험을 못하는 경우

마. 그 밖에 군수가 반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체험하려는 사람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: 일부 반환

가. 체험 예정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예약신청을 취소하는 때: 납부 금액의 10% 공제 후 반환

나. 체험 예정일 1일 전에 예약신청을 취소하는 때: 납부 금액의 20% 공제 후 반환

다. 체험 예정일 당일 예약 신청을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을 때: 납부 금액의 30% 공제 후 반환

제13조(체험장 운영 활성화) 군수는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상품 발굴,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, 수익확보 방안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14조(편의시설 운영 등) 군수는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1. 기념품 판매점, 매점, 휴게실 등 편의시설
2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

제15조(보험가입) 군수는 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16조(손해배상) 군수는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7조(위탁계약 등) 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・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

며, 계약서에는 위탁내용, 수탁기관의 의무, 위탁기간,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8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, 「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등을 준용한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〕

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

(단위: 원)

구분		체험료		비고
		개인	단체	
목공예 체험	성 인	3,000	2,000	체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체험자가 별도 부담
	청소년	2,000	1,000	

〔비 고〕

1. 목공체험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하며,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2. 제11조제3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, 감면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.
3. "단체"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체험하는 경우를 말한다.
4. "청소년"이란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다.

[붙임 1] 관계법령 발췌

관계법령 발췌

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

제10조(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의 다양한 기능의 체험·학습에 필요한 목재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는 등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·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[붙임 2] 입법예고 결과

입법예고 결과

□ **입법예고기간 : 2024. 10. 11. ~ 30.(20일간)**

□ **제출의견 : 1건(평창읍 유○○)**

- 목재 체험관에 서각체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었으면 함. 서각도 목재를 활용한 체험이 가능하므로 서각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고 생각됨, 목재체험관에 목재관련된 자격증 소유자만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임.

□ **검토결과**

- **(미반영)** 조례안 제5조(운영 및 예산의 지원) 조문은 자격증 종류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'000 등 자격증 소지자'로 표현하여 목재·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,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·초빙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6조에 명시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목재체험에 대하여 강사 활동이 가능함.

[붙임 3] 비용추계서

비용추계서(제3조제1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비용발생 요인 :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운영

○ 관련조문

제5조(운영 및 예산의 지원) ① 체험장은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목공예기능사, 목공지도사, 산림치유지도사, 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할 수 있다.

제6조(강사 초빙 등) 군수는 각종 목재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체험장 운영 활성화) 군수는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상품 발굴,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, 수익확보 방안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, 운영비 등은 자체 재원(군비)으로 지출
- 체험료 징수로 수입금 발생

※ 평균 2,500원으로 산정(성인, 청소년 평균 체험료)

나. 추계 결과

❍ 세입

구분	내용	산출기초	금 액	비고
합계			25,000천원	
체험료	목공 체험료(연간)	10,000명 x 2,500원	25,000천원	

❍ 세출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5년	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계
총소요액	**590,500**	**281,000**	**281,000**	**281,000**	**281,000**	**1,714,500**
장비구입비	350,000					**350,000**
시설공사	50,000					**50,000**
운영비 (인건비, 관리비 등)	190,500	281,000	281,000	281,000	281,000	**1,314,500**

※ 2025년 당초예산 450,000천원 확보, 하반기 운영비(140,500천원)는 1회 추경 반영 예정

다. 재원조달 방안 : 자체재원 조달, 체험료 수입금

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안전국 산림과장 이성모
연락처	(033) 330 - 2450

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세 입		**12,500**	**25,000**	**25,000**	**25,000**	**25,000**	**112,500**
체험료		12,500	25,000	25,000	25,000	25,000	112,500
세 출		**590,500**	**281,000**	**281,000**	**281,000**	**281,000**	**1,714,500**
장비구입비		350,000					350,000
시설공사		50,000					50,000
운영비 (인건비, 관리비 등)		190,500	281,000	281,000	281,000	281,000	1,314,500
재원 조달		**590,500**	**281,000**	**281,000**	**281,000**	**281,000**	**1,714,500**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**590,500**	**281,000**	**281,000**	**281,000**	**281,000**	**1,714,500**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 (체험료)	12,500	25,000	25,000	25,000	25,000	112,500
	군비	578,000	256,000	256,000	256,000	256,000	1,602,000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민간자본							
해외자본	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